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25

발의연월일: 2022. 11. 4.

발 의 자:김도읍·권명호·김상훈

김정재 · 성일종 · 유상범

윤한홍 · 장동혁 · 전봉민

전주혜・조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측이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부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음.

이에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66조의13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13을 제66조의14로 하고, 제8장에 제6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6조의13(특별 안전관리 조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 조치 이행 실태를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있다.
 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와 관련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⑤ 제1항의 특별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66조의13(특별 안전관리 조치) |
| |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|
| | 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 밀집 |
| |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 |
| | 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|
| |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특별 |
| |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|
| | <u>수 있다.</u> |
| |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 |
| | 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|
| | 대해 특별 안전관리 조치 이행 |
| | 실태를 지도·점검할 수 있으며 |
| |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|
| | 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 |
| | 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 |
| |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|
| | <u>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안전</u> |
| |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|
| |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|
| | 와 관련된 기관에 필요한 자료 |
| | 를 요구할 수 있다. |
| |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 |
| |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|

<u>제66조의13</u>(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) (생 략) <u>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</u> 한다.

 ⑤
 제1항의
 특별안전관리계획

 의
 내용,
 수립절차
 등
 필요한

 사항은
 대통령령으로
 정한다.

제66조의14(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) (현행 제66조의13과 같음)